

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117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7. 10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: 2026. 7. 10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6. 7. 29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녹지공원과장 김주화)

가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산림재난방지법」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- 신설된 상위법의 제명 반영(안 제1조 및 제2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2조, 제16조
- 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3) 합 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17495(2026. 4. 17.)호]
- 4) 기 타
 - 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901호
 - 예고기간: 2026. 4. 21.~2026. 5. 12.(21일간)
 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- 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마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호철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산림재난방지법」의 제정·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명칭 및 근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산불방지 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 사항으로
-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후속 조치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7. 29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